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황인구 의원 등 15명)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인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동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인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속도 있는 사업 추진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각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건축·환경 등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개별법 상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의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후에도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위해

교육청 심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교육환경에 관한 평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의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입법 미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항에 대한 점검과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통합심의위원회 취지와
위원회 구성에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을 명시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본 건의안은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통합심의위원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의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